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09호 제출년월일 2024. 2. . 제 출 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의 효 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비율 변경(안 제10조제1항)
 - 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 40%, 선정 60%로 위원구성 비율 변경
- 나. 결원 시 위원 위촉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6항)
- 예비후보자 규정 삭제 및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위촉 절차 규정
- 다.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규정 정비(안 제20조)
 -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규정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2. 6. ~ 2. 16. (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나) 경 기 도 : 자치행정과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체" 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를 말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원의 40퍼센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 2. 정원의 60퍼센트 :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제1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하다.

-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위원과 예비후보자를"을 "위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명부 접수후"를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고,"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임규정에 대해 초임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정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자치행정과장 송 천 영
	팀 장 직위·성명	자치지원팀장 한 애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윤 효 정(☎27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단체" 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 거한 단체를 말한다.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 ① ~ ③ (생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4
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치위원 정수 중 <u>40퍼센트</u> 에 대	3 <u>60퍼센트</u>
한 선정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원의 60퍼센트 : 주민자치 교육	1. 정원의 40퍼센트 : 공개모집에 신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공개모집에 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신청하고 공개 추첨으로 선정

- 2. 정원의 40퍼센트 :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선정위원 회에서 선정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 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주 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 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 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 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

(6) --

2. 정원의 60퍼센트 : 기관 및 단체
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
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추
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최소 8시
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u>〈삭 제〉</u>
④ <u>제1항</u>
위원을
⑤ <u>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u>
<u>주민자치회</u>

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 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 ⑦ · ⑧ (생 략)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고,</u> 연임 ------ <u>하며, 한</u>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 <u>다만, 두 차례 (</u>

② (생략)

----- <u>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u> 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

〈삭 제〉

〈삭 제〉

- (7) · (8) (현행과 같음)
- 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자치법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 1. "주민자치회" 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하다.
- 3. "주민총회" 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 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주민자치센터" 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23.11.8.>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 · 면 ·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30.>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3.11.8.〉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8.〉
 -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 3조에서 이동, 〈개정 2020.10.30.〉]
 -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제1 호에서 이동 <2020.10.30.>]
 - 3. 수탁업무 : 김포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제2호에서 이동<2020.10.30.>]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 0.30, 2023.1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
 -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2. 지방의회 의원
 - 3.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 4. 제2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 ③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8.>
-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제5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행정기능 및 예산수립에 관해 협의를 요구할 권한

- 2.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고, 복지, 문화 등 근린자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수탁처리 및 혐의를 요구할 권한
- 3. 주민자치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제9조(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30. 2022.4.6. 2023.11.8.〉
 -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읍 · 면 · 동장 포함) 3명
 -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개정 2020.10.30.>
 -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 ② 삭제 <2020.10.30.>
 -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0.30.〉
 -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
 -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 자치위원 정수 중 40퍼센트에 대한 선정 사항 <개정 2020.10.30, 2023.11.8.>
 - 4.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정원의 60퍼센트 :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 으로 선정 〈개정 2020.10.30, 2023.11.8.〉
 - 2. 정원의 40퍼센트 :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개정 2020. 10.30, 2023.11.8.>
 - 3. 삭제 <2020.10.30.>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 ·동장이 정한다.
-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을 2명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30.〉
 - ② 자치회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제12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임 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1.8.〉
 - ② 삭제 <2020.10.30.>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의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 ⑤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는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 0.10.30. 2022.4.6, 2023.11.8.>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② 주민총회의 참석자격 및 성원에 대한 기준은 운영세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읍 · 면 ·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 4. 삭제 <2020.10.30.>
 -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0.30.〉
 -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0.10.30.>]

- 제16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 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읍 · 면 ·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 삭제 <2020.10.30.>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읍 · 면 ·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세부계획 중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주민총회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0.30.〉
-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 · 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 제1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사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선거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4.

- ② 주민자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을 해촉일로 보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8.〉
 - 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1.8.〉
 -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1.8.〉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3.11.8.〉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1.8.〉
 - 5.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 3.11.8.>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3.11.8.>]
 - 6. 제19조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3.11.8.>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 8호로 이동 <2023.11.8.>]
 - 7.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8.>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8.>]
 -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11.8.>]
 -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 <2023.11.8.>]
 - 10.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신설 2023.11.8.〉
 - ②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8.〉
 - ③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해촉할 수 있다.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

-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 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4.6.>
-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

- 제25조(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읍·면·동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 ② 협의회는 각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다. 〈신설 2020.10.30.〉
- **제26조(기능 및 소집)**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개정 2020.10. 30.>
 -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② 김포시는 협의회 발전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2023.11.8.>
 - ④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거나 협의회원 3분의1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8.>
 - ⑤ 임원 및 기구
 - 1. 회장 1명 〈개정 2023.11.8.〉
 - 2. 부회장 1명 <개정 2023.11.8.>
 - 3. 사무국장 1명 <개정 2023.11.8.>
 - 4. 정책국장 1명 <개정 2023.11.8.>

- 5. 감사 1명 <개정 2023.11.8.>
- 6. 고문 2명 이내 〈개정 2020.10.30.〉
- ⑥ 임원 선출 및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1월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 0.30.〉
- 2.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3. 직전 협의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020.10.30.>
- 4.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4장 주민자치센터

- 제27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

- 제28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 제29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읍·면·동장이 정하며, 읍·면·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치센터 설치 부지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 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8.]

- 제30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8.]

제31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 제32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 제33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 제34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 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8.]

제5장 보칙

- 제3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 ② 삭제 <2022.4.6.>
 -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8.〉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1.8.>]

- 제3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1.8.)]
-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3.11.8.〉]
-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1.8.〉]

참고 3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송명철 외 13명(김포시 주민자치 협의회)	○ 제10조(위원의 선정) 1. 정원의 40퍼센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중에서 공개 추첨 2. 정원의 60퍼센트 :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현행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 공 개추첨,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선정위원회 선정은 바람직하지 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은 권한에 대한 남용이 우려되며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스스로의 자치에도 적합하지 않다	및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유지 -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위원구성 가능 【수정안】 정원의 60퍼센트 :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 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 * 제2조(정의)에 단체의 정의 추가	
	○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현행을 유지해야 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읍면·동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참여하며 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저해시킨다.	예외규정을 두어 읍·면·동의 지역여건 반영 【수정안】	